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14회 임시회 (2017. 7. 17.)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송인수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안 건 명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7. 7. 7. (금)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

- 2017. 7. 10. (월)

4. 관련근거

- 「주차장법」제6조제1항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의2
-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제7조제1항제10호 및 제25조의3

5. 참고사항
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입법예고 (2017. 6. 1. ~ 2017. 6. 21.) 결과 : 별도 의견 없음.

6. 개정이유

「주차장법」 및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등
관련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,
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과 주차요금 감면조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
구민의 전기자동차 이용 및 대기오염 문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.

7. 주요 개정내용

가 안 제4조의4 (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) [신설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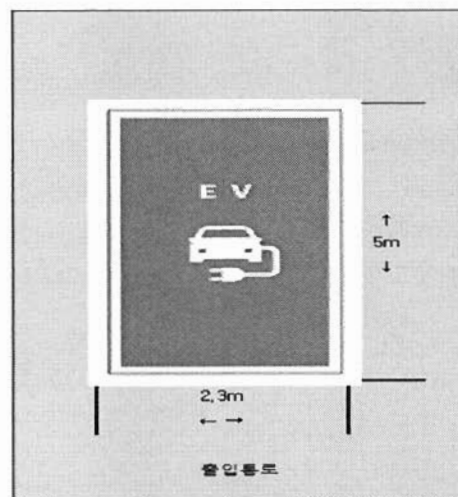
-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(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)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,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,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.
-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.
-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표 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.

나 안 [별표 1]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비고에 제23호 [신설]

23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“전기자동차”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.

다 안 [별표 4] 전기자동차 우선주차장 주차구획 [신설]

전기자동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(제21조의5제3항 관련)



1.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(가로 2.3m 이상×세로 5m 이상)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르고,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

8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개선 및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및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,

○ 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

-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지정 및 요금감면의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「주차장법」(법률 제13804호, 2016. 1. 19.)이 일부 개정되어 2016년 7월 20일 시행되었고,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3871호, 2016. 1. 29.)이 일부 개정되어 2016년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
-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(조례 제6280호, 2016. 7. 14.)를 일부개정하고, 2016년 10월 15일 시행하였으며, 각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음.
- 이에 따른,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은
안 제4조의4(전기자동차에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),
안 [별표1]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제23호,
안 [별표4] 전기자동차 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전기자동차 충전시 주차요금 할인은 「주차장법」 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및 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에 따르면, “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,
- 최근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고,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부문 노력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된 점등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, 본 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,
- 다만,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장에서는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·관리토록 하고,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.

관계법령 및 근거

■ 주차장법 (제6조제1항)

제6조(주차장설비기준 등) ① 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(이하 "경형자동차"라 한다) 및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(이하 "환경친화적 자동차"라 한다)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16.1.19.>

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(제2조의2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3.23., 2016.12.2.>

2. "환경친화적 자동차"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.

가.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
나.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

다.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
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(제7조제1항10 및 제25조의3)

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0.7.15., 2011.9.29., 2013.5.16., 2013.10.4., 2016.5.19., 2016.7.14.>

10. 『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"전기자동차"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.

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

③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
제25조의3(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) ① 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(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)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, 시·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, 총 주차대수의 3% 이상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.

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도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6.7.14.]